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

1998. 12. 7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8년 11월 23일 제출
- 회부 : 1998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630호)” 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916호) 과 동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25호) 이 98.10.16자로 제정·공포되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안제2조)
-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의 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안 제3조)
-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개편함 (안 제6조, 제7조)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 (안 제8조)
-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으로 변경 (안 제2절 제11조)
- 통합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외 7건의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은 설치조례 폐지후 관리권을 인접 학교장에게 이관 (안 부칙 제2조제7항)
- 기구명칭 변경, 계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부칙 제3조)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전의 “지방교육 행정기관직제” 가 폐지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이 98.10.16자로 제정·공포되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대하여는

-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학교장에게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